

2026년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 3. 25.

충청남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6년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나. 사업내용 : 참여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여 측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의 사업비(연구개발, 생산 등)를 지원

다. 참여자격

- (1순위) 2023년 이후 SVI 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 (2순위)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SVI 평가, 지자체 SVI 평가 등)
- (3순위)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경제기업>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가한 「자활기업(법인)」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제외 대상 **참고2** 확인

라. 지원분야 : 연구개발, 생산, 판로, 교육 등 분야별 사업비 지원

분야	항목
연구개발	· 위탁연구, R&D 서비스 활용, 지식재산권 확보 등
생산	· 제품·서비스 고도화 비용, 디자인·브랜딩 개선, 시장테스트, 인증 취득
판로	·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홍보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조사 등
컨설팅·교육	· 경영·영업 전략, 직무교육, 직무분석, 회계프로그램 활용 등
재료비(사업비 30% 이내)	· 시제품 제작, 사회서비스 제공

* 불인정 : 자산취득비, 관리운영비(공과금, 임차료 등), 인건비·복지비용, 접대비, 기부금, 벌금 등

** 위 사업과 유사한 타사업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마. 지원금액 :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와 비례하여 보상

○ 성과 측정 결과에 20% 상한으로 비례하여 지원하나 각 시·군 배정된 예산과 지원 한도 내에서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최근 3년 내 사회적가치지표 양호 이상 (예비) 사회적기업 1억원 한도, 사회연대경제기업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 시점의 기업 성격으로 판단, SVI 측정은 '23~'25년 평가에 해당

○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비(200만원) 지원

○ 시·군비 매칭으로 시·군 사정에 따라 기업별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거나 사업에 미선정될 수 있음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3. 24.(화) ~ 2026. 4. 1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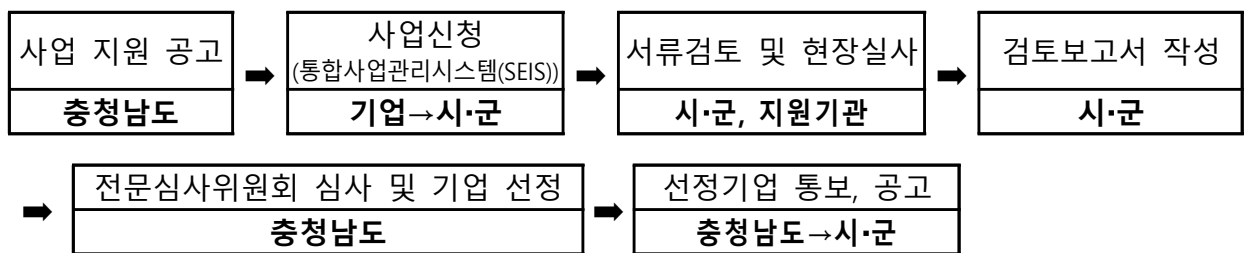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시스템상 '신청서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마감 당일 전산장애 유의)

나.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 시스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3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가. 선정절차



※ 서류검토, 현장실사 결과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 제외

나.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관할 시·군에 선정결과 통보

4 기타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추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5 문의처

-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지원기관 및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담당자 :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635-3324
 - 지원기관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
 - (접수) 시·군 담당부서

시군	부 서	전화번호	시군	부 서	전화번호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 521-5611	금산군	경제과	(041) 750-3023
공주시	경제과	(041) 840-8314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 830-2264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 930-3722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 950-4120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 530-6049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 940-4073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 660-2590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 630-1355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 746-6028	예산군	경제과	(041) 339-7282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 840-2494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 670-2708
당진시	기업육성과	(041) 350-4572			

붙임 1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신청서

1. 기업현황

기업구분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E-mail	
정관에 기재된 사회적 목적	1. 2. 3.		
사업 내용	1.	2.	3.

2. 사업신청서

☐ 가치 지향성 (각 문항 500자 이내 서술)
1. 귀사의 사업모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귀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제품/서비스 주요 사업 내용 및 수익 모델 등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주세요 * (예시1) 농부에게 투자하고 먹거리로 돌려받는 농산물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플랫폼 운영, 플랫폼 수수료(11%)를 통한 수익창출 * (예시2) 고령자여도 누구나 언제든지 추억의 영화를 저렴한 가격(1회당 2,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실버 영화관 운영
2. 귀사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층과 수혜자(사회적 취약계층)는 누구인가요? * 고객과 수혜자가 다른 경우는 각각 작성해주시고 동일한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고 작성해주세요 * (예시1) 고객 : 윤리적 소비에 관심이 많고 천연 비누 구매를 희망하는 20~30대 층 / 수혜자 : 고용시장에서 취업 문턱과 저임금 문제를 경험하는 발달장애인 * (예시2) 고객(=수혜자) :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매개 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기 지역의 발달장애인, 청 소년, 고령자 등
☐ 측정 가능성
1. 귀사의 제품/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 귀사의 제품/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 (예시1) 페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하여 신제품으로 제조 및 판매함으로써 자원소비 및 환경오염 절감
- * (예시2) 취약생산에 대한 거래 기회제공을 통해 취약생산자들의 소득 창출 및 자립 지원

2. 귀사의 제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는 무엇이 있으며, 경쟁사는 어디인가요?

- * 정부, 영리기업, NPO 등 모든 영역을 고려하여 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주세요. 구체적인 기업명 또는 브랜드, 제품/서비스명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예시1) 재활기관 “H감각운동발달센터”에서 1회당 “서비스 단가 44,000원”에 발달장애인 대상 “인지재활 서비스” 제공
- * (예시2) 서울 강북 지역 주거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서비스, 사회적기업 “B하우스” 20만원, “라이브” 월 28만원

☐ 기업 가능성

1. 귀사의 사업모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완화의 목표 및 기대 수준을 적어주세요.

- * 통계자료 및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목표/기대수준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예시1)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전체 규모 중 30% 이상을 시민참여형으로 보급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 * (예시2) 5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현재보다 30~40% 늘려 연 100명 이상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소득 증진에 기여

2. 사회문제 해결 정도에 있어서 현시점(전년도)의 달성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자체 평가)

- * 기업의 실제 성과와 관련된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예시1) 2025년 12월 기준 누적 총 50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고용함. 고용 창출 목표 대비 70% 성과 달성
- * (예시2) 2021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년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독거노인 5,000명 대상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를 무료/할인 제공하였으며, 전체 고객(2만명) 중 35% 정도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해당됨

☐ 기대(적극성 등)

1. 측정담당자 및 주요인력(대표자) 관련하여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 * 측정담당자 인적사항(성별/학력 제외), 주요 경력 및 활동 내용,
- * 대표자 인적사항(성별/학력 제외), 주요 경력 및 활동 내용, 사회적문제에 관심을 가지된 경위

2. 만약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수령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작성해주세요.

- * (예시) 연구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투자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 자격 및 지원요건(임금체불, 보험료 미납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2. 임금 등 체불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기업의 지원금 및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경영규모, 성명(대표자, 사업수행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 일체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사회성과 영역 및 지표	비즈니스 모델 어떤 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가?	사회성과 실적 유무 체크 (○, ×)	2025년 실적 요약
❶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킨 성과	○	·장애인생산품 생산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지체장애인협회 수건 200개 기부 50만원
❷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하여 취약계층 소득 증진 시킨 성과	○	·장애인 10명 고용
❸ 장애인(중증)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해 돌봄관리·자립 지원 등 돌봄서비스 대체 성과		
❹ 고용지원 (창업·이직 지원)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산조직을 직접 만들거나 창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을 증진 시킨 성과		
❺ 영세업체	취약생산자 또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수익)을 증진시킨 성과		
❻ 농업분야	국내 소농을 위해 기존 거래체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소농의 증진시킨 성과	○	·배즙 가공을 위한 원료 구입시 지역소농민과 거래 0톤 00억원
❼ 관광분야	경제적 생산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에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현지 주민 생산자와 지역경제에 기여한 성과		
❽ 재활용	재활용을 통해 신규 자원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신규 자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❾ 재사용	재사용을 통해 신규 제품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소비량을 줄이고, 신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❿ 친환경	비재생물질, 에너지를 재생 가능 물질, 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킨 성과		

* 신청기업은 2025년 기준으로 위에 해당되는 사회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적이 있는지 사전 체크 후 제출

성과	세부성과 지표		사회성과 창출방식
사회서비스	①제품·서비스		▶ 기존 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킨 성과 - (일반시장 제공가격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제공가격) × 총제공량 × 기여율 - 외부지원금
일자리창출	직접고용	②취약계층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하는지?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월급여 - 해당 유형 취약계층 월급여) × 근무개월 수 - 외부지원금
		③장애인(중증)	▶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해 돌봄관리·자립지원 등 돌봄서비스 대체 성과 - (중증장애인 월평균 근무시간 × 근무개월 수) × 주간보호시설의 시간당 이용 비용
	④고용지원(창업·이직 지원)		▶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가 창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을 증진 시킨 성과 - (교육 후 소득 - 교육 전 소득) × 근무개월 수 - 외부지원금
지역사회 협력	취약 기업 거래	⑤영세업체	▶ 취약생산자 등에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수익)을 증진시킨 성과 - 취약생산자와 거래액 × 대상 기업(산업)의 부가가치율 - 외부지원금
		⑥농업분야	▶ 국내 소농을 위해 기존 거래체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소농의 증진 시킨 성과 - (기업의 거래가격 × 거래량) × 농업유통비비율* - 외부지원금 (*)농업유통비비율=출하유통비율×출하유통비율/생산자수취액비율
		⑦관광분야	▶ 경제적 생산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에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현지 주민 생산자와 지역경제에 기여한 성과 - (취약지역과의 연간 총거래액 × 해당 생산조직의 부가가치율*) - 외부지원금 (*)부가가치율=(매출과표-매입과표)/매출과표×100
혁신(환경)	환경개선	⑧재활용	▶ 재활용을 통해 신규 자원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신규 자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 자원소비 절감효과 (신제품 평균가격 × 해당제품의 재료비 비율) × 중고제품 거래가격/신제품 가격 - 환경오염 저감성과 중고제품 재료의 Eco-cost × 중고제품 거래가격/신제품 가격
		⑨재사용	▶ 재사용을 통해 신규 제품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소비량을 줄이고, 신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인 성과 - 자원소비 절감효과 (일부 과정)=중고재료 거래가격 × 해당 재료의 원재료비(광물) 비율 - 환경오염 저감성과 (일부 과정) 해당 재료의 일반 폐기방식 Eco-cost - 해당 재료의 재활용 방식 Eco-cost
		⑩친환경	▶ 비재생물질, 에너지를 재생 가능 물질, 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현저히 높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킨 성과 - 자원소비 절감성과 (기존 재료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서비스의 단위당 재료가격 - 사회적기업이 대체한 재료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단위당 자원가격) × 사회적기업의 총 제품/서비스 제공량 - 환경오염 저감성과 (일반시장이 이용하는 기존 재료 Eco-cost - 사회적기업의 대체재료 Eco-cost) × 사회적기업의 총 제품/서비스 제공량

기 본 서 류	1.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붙임 1】 2. 참여자격 확인 및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2】 3. 기업소개서(리플릿, 카다로그 등 서식 자율) 1부 4. 기업 정관 1부 5. 2023~20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1부 7.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서류(①(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②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③마을기업 지정서, ④자활기업 인정서) 1부 *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 기업만 자격 인정 8.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확인서(측정 결과 탁월, 우수, 양호 이상)
측 정 서 류	9. 제품/서비스 소개서 및 단가표(관련 이미지 캡처본 가능) 10. 2025년 1 ~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붙임 3】 11. 2025년 1 ~ 12월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로형) 12. 2025년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 【붙임 4】 13. 2025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참여·수혜 실적 【붙임 5】 14.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실적 사전진단서 【붙임 6】
참 여 제 외 대 상	- '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기업 -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참고 3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검토의견서

I.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담당자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대상 여부	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	SVI 측정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	
조직형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주관) 기업유형	☐ 인증 사회적기업(인증일: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일: 년 월 일)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역형, 부처형)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 년 월 일) ☐ 마을기업(지정일: 년 월 일) ☐ 자활기업(인정일: 년 월 일)				

II. 그간 각종 재정지원사업 지원 실적 및 제재처분 내용

기업명	검토항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사업성과	제재처분 내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고용부)	- '19년 : 13백만원 (CI개발, 홍보물 온라인 광고) - '20년 : 12백만원 (B.I.(명칭변경), 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2019년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2020년 매출 액이 44,649,180원 으로 증가하였고 기 업의 홍보 효과 상승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부)	- '18년 : 46백만원 - '19년 : 216백만원 - '20년 : 168백만원 - '21년 : 91백만원	- '18년 : 20명 - '19년 : 20명 - '20년 : 20명 - '21년 : 20명	- 인건비 지원 받아 50% 이상 취약계 층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 '19년 5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사회성과인세티브 (SPC) 사업 참여	- '19년 : 5.5백만원 (현금) - '20년 : 15백만원 (현금) - '21년 : 25백만원 (현금)		- 취약계층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18년 22 백만원, '19년 60 백만원, '20년 100 백만원 사회성과 달성	

Ⅲ.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및 검토의견

□ 정량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건전성 (10)	영업이익	· 최근 3년간 연 평균 영업이익 〇〇% 증가
수익성 (10)	당기순이익	· 최근 3년간 연 평균 당기순이익 〇〇% 증가
성장성 (10)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〇〇% 증가

□ 정성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예시)
사회가치 지향성(20)	기업 사회적가치 지향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정관 등에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주된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취약계층의 임금 수준이 동일 서비스 평균보다 월등히 높음 · 기부, 〇〇에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 활동 에 사용함 ·
	기업 사회적가치 실현 가능성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목적 실현하려는 의지 가 매우 강함 · · ·
측정가능성(20)	사회적가치 성과지표 측정 가능성	· · · ·
기업가능성(20)	사회문제 해결·완화 목표 및 기대 수준	· · · ·
	사회문제 달성 정도	· · · ·
적극성(10)	적극적인 협조 정도	· 자료 제출 적극성 · 측정 전담 인력 배치 여부

☐ 특이사항

IV. 검토 의견

사업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간 기업의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 적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기재

년 월 일

검토 기관장(자치단체장) (서명 또는 인)

참고 4

정량평가 세부기준

1. 재무상태 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 및 배점(30점)

세부 항목	배점	평가 사항	평가 내용
1)건 전 성	10	영업이익 (3년 평균)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총자본-부채총액 · 총자본 :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의 합 - 계산식 : ('23년도 자기자본비율 + '24년도 자기자본비율 + '25년도 자기자본비율)/3
2)수 익 성	10	당기순이익 (3년 평균)	- 총자본순이익률 :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총자본×100 - 계산식 : ('23년도 총자본순이익률 + '24년도 총자본순이익률 + '25년도 총자본순이익률)/3
3)성 장 성	10	매출액 증가율 (3년 평균)	- 계산식 : ['23년 매출액 - '22년 매출액 / '22년 매출액 × 100 + ('24년 매출액 - '23년 매출액) / '23년 매출액 × 100 + ('25년 매출액 - '24년 매출액) / '24년 매출액 × 100] / 3

※ 지수 산출 시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2. 재무상태 백분위 환산표

평가사항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비율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점수
자기자본비율	50% 이상	10	49% ~ 40%	8	39% ~ 30%	6	29% ~ 20%	4	20% 미만	2	0% 이하	0
총자본순이익률	10% 이상	10	9% ~ 7%	8	6% ~ 4%	6	3% ~ 1%	4	1% 미만	2	0% 이하	0
매출액증가율	50% 이상	10	49% ~ 40%	9	39% ~ 30%	8	29% ~ 20%	7	20% 미만	6	0% 이하	0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심사표

[illegible]

참고 6-1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측정 결과(지원기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선정기업별 지원 결정액(단위: 천원)						
접수 번호	기업명	기업 형태	세부 측정 지표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산식 및 기준값	
1	○○기업	SVI 양호 이상	①제품·서비스	150,000	예) (30천원-15천원)×1만개	
			②취약계층(고용)	90,000	예) (275-200만원)×12월×10명	
			⑤생산분야	80,000		
			소 계	320,000	인센티브 (15%)	48,000
2	○○기업	자활기업	①제품·서비스	30,000		
			②취약계층(고용)	75,000		
			③장애인(중증)	310,000		
			⑥재활용	45,000		
			소 계	460,000	인센티브 (15%)	50,000
3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②취약계층(고용)	1,000		
			⑧재사용	2,000		
			소 계	3,000	인센티브 (15%)	2,000
4	○○기업	○○○				
5	○○기업	○○○				
측정기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6-2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검증 결과(검증위원회)

[illegible]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 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참여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수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 ① “사업참여기관”은 사업비 집행관리 등을 위해 e나라도움시스템과 통합사업 관리시스템을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관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으로 하여금 별도 지정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 포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의무) ①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수행기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① “사업참여기업”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지원금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참여기업”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참여기업”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조치) ① “사업참여기업”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에 따라 약정해지 된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 사용 용도가 “사업비 지원사업계획서”와 다른 경우

4. 지원금 사용 내역이 “사업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와 다른 경우

③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사업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사업참여기업’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기업”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업참여기업”이 제3항에 의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참여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2조(약정의 변경) ①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사업수행기관”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사업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 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3조(약정해지) “사업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사업수행기관”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6.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사업수행기관”이 판단한 경우

제14조(선정취소) “사업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서의 인증, 지정, 인가 또는 인정 취소된 경우

제15조(지원금 정산) ①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에게 지원금 잔액, 매출액 사용내역 및 이익금의 향후 사용계획을 1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원금에 대해 정산을 완료한 후 미사용 금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사업참여기업”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참여기업”이 “사업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용한 경우(사업비 용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포함)에는 승인 없이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참여기업”이 사업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e나라도움 시스템 확인)와 보조금계좌에서 보조금 예치로 인해 발생한 이자(개별 확인)은 보조금 정산 시 “사업수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업참여기업”은 약정서 제13조에 의한 해지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사업참여기관”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사업참여기업”은 약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실적보고서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지출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립방안 강구)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 종료 후 시장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보관)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00시·도·군·구(청)장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				
사용용도	☐ 연구개발	원	☐ 유통망 입점 ☐ 마케팅 ☐ 홍보	원
	☐ 제품·서비스 고도화 비용	원	☐ 해외시장 조사 ☐ 컨설팅·교육	원
	☐ 디자인·브랜딩	원	☐ 시제품 제작	원
	☐ 특허출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사회서비스 제공	원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참고 8-2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예산 운용 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필요시)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100%)	자부담 (필요시)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 계약금 월 일 . 중도금 월 일 .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보조사업자)

1.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및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기 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소계	지방비(광역)	지방비(기초)
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 보조비율: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예 산 과 목: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세부사업명 기재(세부사업 안에 수개의 세부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인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불입의 교부조건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지침에 위반한 경우 등)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자치단체장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사업참여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참여기업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물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사업참여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사업참여기업은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참여기업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사업참여기업은 아래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0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기초: 7일 광역: 30일
------	--	-----	--	-------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주관)기업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수행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e-mail: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26년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중간·최종)실적·정산 보고서

I. 사업개요(요약)

기업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사업비 내역	총액	원	보조금 (총계)	원	
	○○○	원	국비	원	
			지방비 (광역)	원	
			지방비 (기초)	원	
	○○○	원	자부담 (필요시)	원	
	○○○	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구체적 으로작성)	상시근로자수 (사업신청전월)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료전월)		
	매출액 (사업신청전월)		매출액 (사업종료전월)		
	* 표는 최종보고서 작성 ○ 추진실적 및 사업 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시행전과 시행후로 비교 분석 작성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진실적	달성율
			%
			%
			%

〈작성요령〉

- 세부사업명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예산운용계획서’의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상 세부사업명을 기재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IV.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V.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VI.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보 고 서	- - - - -		
2	발간책자	- - - - -		
3	프로그램			
4	포스터			
·	·			
·	·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VII. 예산집행 실적

1. 총괄

(단위: 원)

구분	사업예산(A)	지출금액(B)	잔액(A-B)
계			
보조금(총계)			
국비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자부담 (필요시)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단위: 원)

세부사업별	세부항목	사업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국비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총계								
(△△사업)								
(□□사업)								

* 세부사업명과 세부항목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예산운용계획서'의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상 세부사업명과 세부항목을 기재

* 세부사업별 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전용카드 등 개별 건별 지출내역은 3. 세부사업별 세부 지출 내역에 기재

3. 세부사업별 세부 지출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세부항목	사용목적	지출일자	지출액	거래처명	지출방법	증빙자료 번호	비고
<작성예시> 총계				2,504,000				
(△△사업)			2023-05-01	950,000	00문고	전자세금 계산서	①	
(△△사업)			2023-05-06	100,000	00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②	
(△△사업)			2023-05-13	402,000	00	보조금 전용카드	③	
소 계				1,454,000				
(□□사업)			2023-05-02	550,000	00문고	전자 계산서	④	
(□□사업)			2023-05-10	500,000	00상사	기타	⑤	
소 계				1,050,000				

* 작성시 참고사항

- 1)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지출일자와 지출액 등) 기재
- 2) 지출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보조금전용카드, 기타 중에서 기재(e나라도움 증빙 구분과 같음)
- 3) 세부사업명과 세부항목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의 2. 예산 세부집행 현황의 세부사업명과 세부항목을 기재
- 4) 지출증빙자료는 최종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시 일괄 제출(중간 실적보고시 제출 불요)
- 5)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e나라도움 집행내역을 별도 출력하여 제출

VIII.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중간보고시만 작성)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